

미국 50개 주 회의공개법 연구

A Study on 50 states' Open Meeting Act in the United States

최정민(Choi, Jeong Min)* · 김유승(Kim, You-seung)**

1. 들어가는 글
2. 미국 회의공개법의 제정
3. 주별 회의공개법 일반 개요
4. 주별 회의공개법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5. 주별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및 벌칙
6. 우리나라 회의공개제도를 위한 시사점
7. 나가는 글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대우교수(mingg11@gmail.com) (제1저자).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kimyus@cau.ac.kr) (교신저자).

■ 투고일 : 2018년 7월 2일 ■ 최초심사일 : 2018년 7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7월 24일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 회의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미국 50개 주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정보공개법 제정 20년을 맞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50개 주 회의공개법의 일반적인 개요, 둘째, 회의의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셋째, 회의 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 및 소송제기 절차 및 벌칙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50개 주마다 회의공개법의 내용은 다양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사전에 회의 일정과 의제 등이 공표되도록 하며, 회의록과 회의를 녹화한 자료는 시민이 접근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벌금부터 징역형까지로 책임을 물었다. 이를 통해 도출한 우리나라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의공개제도는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의 올바른 방식과 충분한 기간으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회의 관련 시간, 날짜, 의제 등에 관한 사전공지의 충실한 내용은 회의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셋째, 사전 공지 방식과 대상은 가능한 폭넓고 다양해야 한다. 넷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무효다. 다섯째, 시민 누구나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석자, 논의주제, 투표 내용 등을 포함한 충실한 회의록 작성과 회의록, 녹음기록에 대한 시민 접근을 담보해야 한다.

주제어 : 미국, 알권리, 정보공개, 회의공개, 회의공개법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lucidate the implications for 20 year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law by analyzing contents of the public regulations of 50 states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it looks at the general outline of the open meetings law of the 50 states, including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 of the advance

notification of the meeting, and the protest procedure and penalties for the violation of the law. As a result of analysis, under the law, public meetings should announce their schedule and agenda in advance, and minutes of meetings and recording of meetings should be accessible to citizens. Furthermore, a person who violates the law for opening meetings could be fined or imprisoned. The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Open Meetings Act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open meeting system starts with the appropriate period and method of advance notice of meeting holding. Second, the substantive contents of the advance notification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the meeting disclosure system. Third, the method and subject of advance notification should be as wide and diverse as possible. Fourth, all decisions of the meeting that violate the law are null and void. Fifth, a system should be set up so that any citizen could easily raise objections to the violation of the law. Sixth, the person who violates the law should be held responsible. Lastly, citizen access to minutes, recordings as well as comprehensive meeting minutes writing including attendees, agendas, and ballots should be guaranteed.

Keywords : United States, rights to know, freedom of information, open meetings, open meetings act

1. 들어가는 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되었다. 1998년 26,338건이었던 정보공개 접수 건수는 2016년 756,342건으로 약 29배로 증가하였고, 2016년 기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전부공개율은 기초자치단체 87%, 중앙행정부처 75%에 달하게 되었다(행정자치부 2017, 17, 21). 정보공개청구시스템(open.go.kr)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사

립대학까지 시스템을 통한 통합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낮은 정보공개율, 중요 정보에 대한 여전한 비공개 관행, 정보공개에 대한 낮은 인식 등 시급히 풀어야 할 문제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을 기반으로 한 정보공개청구제도의 양적 성장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공공기관의 일상적 행정 행위의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 주권시대의 알권리는 결과에 대한 접근만으로 충족될 수 없다. 시민은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인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은 이를 설명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시민들은 공적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권리가 있으며, 그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Nadler and Schulman 2006). 개인 또는 집단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정책의 입안, 행정적 처분의 결정 과정 등에 접근하고 참여할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에서 시민의 주권이 원활히 행사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변주연(2008, 232)은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을 비밀로 하여 두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과 결정을 용인할 위험을 방치하는 것이며, 민주적 행정 구현의 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남용, 오용되었을 경우, 시민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명확하지 않고, 실제 오남용의 사례는 차고 넘친다. ‘법률상 비밀, 비공개’와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뒤이어, 가장 빈번히 제시되고 있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 지장’이라는 비공개 사유는 국정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사례, 관치금융의 적폐라 불리운 서별관 비밀회의의 사례 등에서 경험하였듯이,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되었다(김유승 2017).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아 일명 선사인법

(Sunshine Act)이라 불리는 미국의 회의공개법(Open Meetings Act)에 주목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정보공개법」에는 회의공개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공공기관에 회의록의 생산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법령의 취지는 회의록의 공개가 아닌 ‘원활한 생산과 보호’에 있다. 법령은 기본적인 회의록조차 생산, 관리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듯 회의록을 상당 기간 비공개할 수 있는 보호 조치까지 마련하고 있다.¹⁾ 회의 자체의 공개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와 벌칙 및 회의록 작성, 관리,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 회의공개법과는 전혀 다른 지향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결과의 공개에서 과정의 공개로 확장되는 패러다임의 전진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에서 미국 50개 주 회의공개법의 내용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유의미한 시사점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회의공개법의 일반 개요, 둘째, 회의공개의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마지막으로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 및 소송제기 절차 및 벌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 회의공개법의 제정

전 세계에서 회의공개에 관한 독립적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거의 유일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속기록, 녹음기록, 녹취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1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회의록 생산 및 공개 관련 제도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12권 제3호에 실린 이혜진, 정은경(2012)의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와 『기록학연구』 제55호에 게재된 최정민, 김유승(2018)의 ‘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중심으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 국가인 미국에서의 회의공개법은 연방정부보다 주 정부에서 먼저 제정되었다. 1915년 앨라배마 주는 미국 50개 주 정부 중 최초로 회의공개법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매우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던 이 법은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버렸다. 이러한 회의공개법은 알 권리 개념과 궤를 같이 하며 확산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미국 내 알권리운동을 기반으로 주별 회의공개법 입법화 문제가 논의되었고(Wiggins 1956, 3-4; 유일상 2003, 1. 재인용), 1972년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그 필요성이 다시금 강력히 제기되면서, 1970년대 중반 46개 주에서 회의공개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1976년 뉴욕 주를 마지막으로 50개 모든 주와 콜롬비아 특별구에 회의공개법이 마련되었고, 같은 해 연방정부도 회의공개법(Open Meetings Act, 5U.S.Code §552b)을 제정하였다(손태규 2015).

연방정부 회의공개법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인준하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회 연방정부 기관들의 회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공식 약칭은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로, 약 50개의 연방정부 산하 기관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연방 회의공개법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의 내용도 기록해야 하며, 기록되지 않는 기관 관리와 기업체 임직원 간의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은 금지된다. 또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10가지 정보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이 10개 중 9개는 미국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5U.S.Code §552)의 비공개 대상 정보와 유사하며, 나머지는 해당 공공기관이 중재에 참여하고 있거나 소송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김유승 2017). 연방 회의공개법 상 비공개 회의를 가능하게 하는 정보 유형 10가지는 <표 1>과 같다.

〈표 1〉 미국 연방 회의공개법 상 회의 비공개 사유가 되는 10가지 정보 유형

- ① 행정 명령으로 확립된 기준에 따라 국방이나 외교 정책을 위해 기밀로 유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허용되고, 해당 행정 명령에 따라 실제로 적절하게 분류된 사안
- ② 기관의 내부 인사 규칙 관련 정보
- ③ 정보공개법을 제외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확정된 사안. 단, 해당 법률은 쟁점에 관한 재량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사안을 규정하거나, 구체적 보류 기준을 확립하거나 보류되는 사안의 구체적 유형을 언급해야 한다.
- ④ 개인에게서 얻거나 특권이 성립됐거나 기밀인 영업 비밀 및 상업 정보나 재정 정보
- ⑤ 특정인의 범죄를 고발하거나 특정인을 공식적으로 견책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
- ⑥ 공개가 개인 사생활의 명백하고 부당한 침해를 구성하는 개인적 성질의 정보
- ⑦ 법 집행 목적으로 수집된 수사 기록 또는 (서면) 수사 기록에 포함됐을 정보.
- ⑧ 금융기관의 규제나 감독을 책임지는 기관에 의해, 그 기관을 대신하여 또는 그 기관을 위해 준비된 감사, 운영 또는 현황 보고를 포함하거나 이에 관련된 정보.
- ⑨ 성급한 공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통화, 증권, 상품 또는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기관의 경우, (i) 통화, 증권 또는 상품에 대한 현저한 금융 투기를 야기하거나 (ii) 특정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현저하게 저감시킬 수 있는 정보 기타 기관의 경우, 기관이 제안한 조치를 실행하는 데 현저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 단, 기관이 제안 조치의 내용이나 성질을 이미 일반에 공개했거나 법률에 따라 기관이 제안에 대한 최종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직권으로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에는 (B)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⑩ 기관의 소환장 발부, 민사 소송이나 절차, 외국 법원이나 국제 재판소의 소송 또는 중재에 대한 기관의 참여, 5U.S.C.554의 절차에 따르거나 다른 방식으로 의견 청취 후 기록에 대한 결정 등 기관의 공식 재결에 관한 구체적 사건에서 기관의 시작, 수행이나 처분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정보.

미국 50개 주 회의공개법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Open Meeting Act 또는 Open Meeting Law이다. 다만, 몇 개 주들은 Sunshine Law for Open Meetings, Public Meetings Law, Open Governmental Proceedings Act 등 유사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 중 눈에 띄는 명칭은 인디애나의 회의공개법으로, Open Door Law라 불리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50개 주별 회의공개법 명칭 및 법령

주명	법령명	법령 번호
앨라버마	Alabama Open Meetings Act	2006 Alabama Code - Title 36 - Chapter 25A
알래스카	Alaska Open Meetings Act	Alaska Statutes Title 44. State Government § 44.62.310. Government meetings public
애리조나	Arizona Open Meetings Act	Title 38 - Public Officers and Employees: Chapter 3 Conduct of Office: Article 3.1 Public Meetings and Proceedings: A.R.S. §§ 38-431 to 431.09
아칸소	Arkansas Open Meetings Act	2010 Arkansas Code Title 25 - State Government Chapter 19 - Freedom of Information Act § 25-19-106 - Open public meetings.
캘리포니아	California Open Meeting Act (Brown Act, Bagley-Keene Act)	Statutes 54950-54963 of the California Code (Brown Act) / Statutes 120-11132 of the California Code (Bagley-Keene Act)
콜로라도	Colorado Sunshine Law for Open Meetings	Statute 24-6-402 of the Colorado Code
코네티컷	Connecticut Open Meetings Law	Statutes 1-200 through 1-259 of the State code
델라웨어	Delaware Open Meetings Law	Title 29, Chapter 100, Statutes 10001-10006 of the Delaware Code (§ 10004 Open meetings)
플로리다	Florida Open Meetings Law	Statute 286 of the Florida Code
조지아	Georgia Open Meetings Act	Chapter 14, Statutes 50.14.1-6 of the Georgia Code
하와이	Hawaii Sunshine Law (Public Agency Meetings and Records)	Part I of chapter 92 of the Hawaii Revised Statutes
아이다호	Idaho Open Meeting Law	Title 67 chapter 23 statutes 40-47 of the Idaho statutes
일리노이	Illinois Open Meetings Act	Title 5 chapter 120 statutes 1-7.5 of the Illinois code
인디애나	Indiana Open Door Law	Title 5, chapter 14, statutes 1.5.1-8 of the Indiana code (IC 5-14-1.5 Chapter 1.5. Public Meetings (Open Door Law))
아이오와	Iowa Open Meetings Law	Iowa Code Chapter 21 - Official Meetings Open to Public (Open Meetings)
캔자스	Kansas Open Meetings Act	2006 Kansas Code-75-4317, 75-4320b
켄터키	Kentucky Open Meetings Act	Statutes 61.800-61.850 of the Kentucky revised statutes
루이지애나	Louisiana Open Meeting Law	Statutes 42.4.1-13 of the Louisiana code
메인	Maine Open Meeting Law	Title1, chapter 13 of the Maine Revised Statutes

메릴랜드	Maryland Open Meetings Act	Title 10, subtitle 5 of the Maryland code
매사추세츠	Massachusetts Open Meetings Act	Chapter 30A, statutes 11A-11C and Chapter 34, statute 9 and chapter 29, statute 23A-D of the Massachusetts General Laws
미시간	Michigan Open Meetings Act	Act 267 of 1976
미네소타	Minnesota Open Meeting Law	Section 471.705 of the Minnesota Statutes
미시시피	Mississippi Open Meetings Act	Title 25, Chapter 41, Sections 1-17 of the Mississippi Code
미조리	Missouri Sunshine Law for Open Meetings	Chapter 610 of the Missouri Revised Statutes
몬테나	Montana Open Meetings Law	Montana Code Annotated 2009 Title 2 Chapter 3 Part 2.
네브래스카	Nebraska Open Meetings Act	Statutes 84.1407-84.1414 of the Nebraska Code
네바다	Nevada Open Meeting Law	Chapter 241 of the Nevada Revised Statutes
뉴햄프셔	New Hampshire Open Meetings Law	Chapter 91A of the New Hampshire Code
뉴저지	New Jersey Open Public Meetings Act	Title 10 Chapter 4 of the New Jersey code
뉴멕시코	New Mexico Open Meetings Act	Statutes 10.15.1-4 of the New Mexico Annotated Statutes
뉴욕	New York Open Meetings Law	Article 7 sections 100-111 of the New York code
노스캐롤라이나	North Carolina Open Meetings Law	Article 33C, statutes 143-318.9-18 of the North Carolina code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Open Meetings Statute	Statutes 44-04-17.1 through 44-04-21.2 of the North Dakota Code
오하이오	Ohio Open Meetings Law	Statute 121.22 of the Ohio Revised Code
오클라호마	Oklahoma Open Meetings Act	Statutes 301-314 of the Oklahoma Statutes
오리건	Oregon Public Meetings Law	Chapter 192 of the Oregon code
펜실베이니아	Pennsylvania Sunshine Act	Title 65 statutes 701-726 of the Pennsylvania code
로드아일랜드	Rhode Island Open Meetings Act	Chapter 42-46 of the Rhode Island General Laws
사우스캐롤라이나	South Carolina Open Meetings Law	Title 30 Chapter 4 of the South Carolina Code of Laws
사우스다코타	South Dakota Open Meetings Law	Chapter 1, section 25 statutes 1-9 of the South Dakota Codified Laws
테네시	Tennessee Open Meetings Law	Title 8, chapter 44, part 1 of the Tennessee code
텍사스	Texas Open Meetings Act	Title 5A chapter 551 of the Texas Government Code

유타	Utah Open and Public Meetings Act	Title 52, chapter 4 of the Utah Code
버몬트	Vermont Open Meetings Law	Title 1, Chapter 5 of the Vermont Statutes
버지니아	Virginia Open Meetings Law	2010 Code of Virginia, Title 2.2, Chapter 37
워싱턴	Washington Open Public Meetings Act	Chapter 42.30 of the Revised Code of Washington
웨스트버지니아	West Virginia Open Governmental Proceedings Act	Statute 6-9A of the West Virginia Code
위스콘신	Wisconsin Open Meetings Law	Statutes 19.81-19.98 of the Wisconsin statutes
와이오밍	Wyoming Public Meeting Law	Chapter 16 Article 4 of the Wyoming statutes

3. 주별 회의공개법 일반 개요

회의공개법의 내용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회의공개의 목적, 회의 정의, 적용 받는 정부기관, 공개회의 사전 공지 및 절차, 회의 프로세스, 비공개 회의의 근거, 그리고 위반시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개회의 사전 공지 및 절차와 위반시 처벌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므로 본 장에서는 이를 제외한 일반적인 회의공개법 개요를 논하고자 한다.

첫째, 주마다 세부적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회의공개법의 공통적 목적은 공공기관의 활동 및 프로세스가 공개적으로 수행되게 함으로써, 시민의 감시와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시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시민은 자신을 섬기는 기관에 주권을 양도하지 않으며, 위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공무원에게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결정할 권리를 주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알권리의 결정권이 시민에게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하와이 주는 공개회의 요구 조항이 광범위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공개 회의 요구 사항에 대한 예외 조항은 비공개 회의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공개회의를 폭넓게 해석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둘째, 회의의 정의를 보면, 법은 공공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할 목적으로 공공기관 구성원으로 구성된 모든 정족수의 모임을 ‘회의’로 규정한다. 일반에게 공개하는 회의의 범주에 공공기관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전통적인 대면 회의 이외에, 전화회의, 전자통신 수단을 활용한 회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 미국의 회의공개법에서 공개회의의 정의와 범위는 전자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회의를 법에서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50개 주 회의공개법들은 전자통신을 수단으로 하는 회의를 포함한다고 단순히 언급한 경우에서부터, 이메일만 언급한 경우, 이메일, 전화, 화상회의를 부분적으로 언급한 경우까지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50개 주 가운데 전자매체를 활용한 회의가 언급되지 않은 주는 26개 주이며 나머지 24개 주에서 전화회의와 전자 매체를 활용한 회의를 공개회의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셋째, 회의공개법의 적용 대상 정부 기관은 일반적으로 주 정부의 모든 이사회와 위원회, 하위 부서와 지차체를 포함한다. 입법부는 대체로 회의공개법 적용 대상 기관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적용 여부가 모호하거나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유타 주는 공공기관을 ‘모든 행정, 자문, 집행 기관 또는 주정부 또는 그 정치적 하부 조직의 입법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역시 입법부를 공공기관의 정의에 포함시켜 회의공개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있다. 반면, 오클라호마 주는 의회를 공개회의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면제 대상 기관은 주마다 다양하다. 애리조나 주의 경우는 사법 절차, 입법 간부회, 입법부 회의위원회, 사법위원회, 지문 채취위원회 등이 공개회의 면제 대상 기관으로 나열되고 있다.

넷째, 회의 프로세스에 대한 일반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든 공공기관이 회의 시간 및 날짜, 출석 회원, 논의된 주제 및 행해진 투표를 포함한 회의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회의록에 시민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②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한 회의 녹음과 방송이 가능하

며 해당 자료에 시민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²⁾ ③ 공개회의에서 투표는 비밀투표가 아니어야 하며, 시민은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비공개 회의를 허락하는 사유 역시 주 정부별로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도 가장 공통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공개회의 면제 이유는 개인정보, 변호사-고객 특권, 보안 및 치안 정보, 재산 매입 또는 매각, 조합 협상, 면허시험 및 결정, 타법률에 의한 면제 등 크게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이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표결을 실시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비공개 회의를 가질 수 있다. 주별 비공개 회의 사유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주별 비공개 회의 사유

주명	개인 정보	변호사-고객 특권	보안/치안 정보	재산 매입 또는 매각	조합 협상	라이선스 시험/결정	타법률 면제
앨라바마	○	○	○	○	○		
알래스카	○						○
애리조나	○	○		○	○		○
야칸소	○		○			○	
캘리포니아	○	○		○	○	○	
콜로라도		○	○	○	○		○
코네티컷	○	○	○	○			○
델라웨어	○	○	○	○			○
플로리다			○				
조지아	○	○		○			○
하와이	○	○	○		○		○
아이다호	○				○		○
일리노이	○	○		○		○	
인디애나	○	○	○	○	○	○	○
아이오와	○	○	○	○		○	○

2) 캘리포니아의 경우, 정부 기관은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회의 녹음 및 방송을 허용한다. 시민은 공개회의를 녹음한 것에 접근할 수 있다. 단 공공기관은 녹음일로부터 30일 이후 이를 파기할 수 있다. 모든 투표는 비밀 투표 없이 공개된다. 법에 의거하여 문서가 비공개되지 않는 한, 공공기관은 회의개최 이전 또는 회의 진행 중에 위원회 구성원에 배포된 문서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캔자스	○	○	○	○	○		
켄터키	○			○	○		○
루이지애나	○		○		○		
메인	○	○		○	○	○	○
메릴랜드	○	○	○	○	○	○	
메사추세츠	○		○	○	○		
미시간	○	○		○	○		○
미네소타	○	○	○	○	○		
미시시피	○	○	○	○		○	○
미조리	○	○	○	○	○		○
몬태나	○	○					
네브래스카	○		○		○		
네바다	○					○	
뉴햄프셔	○	○	○	○			
뉴저지	○	○	○	○	○	○	○
뉴멕시코	○	○		○	○	○	
뉴욕	○	○	○	○	○	○	
노스캐롤라이나	○	○	○		○		○
노스다코타		○					○
오하이오	○	○	○	○	○		○
오클라호마	○	○		○	○		○
오리건	○	○	○	○	○	○	○
펜실베이니아	○	○		○	○		○
로드아일랜드	○		○	○	○		
사우스캐롤라이나	○		○	○			
사우스다코타	○	○					
테네시		○					○
텍사스	○	○	○	○		○	
유타	○	○	○	○	○		
버몬트	○		○	○	○		○
버지니아	○	○	○	○		○	○
워싱턴	○	○	○	○			
웨스트버지니아	○	○		○		○	○
위스콘신	○	○		○		○	
와이오밍	○	○	○	○	○	○	○
빈도	46	38	31	37	29	18	27

〈표 3〉에서 보듯이, 개인정보는 대부분의 주별 회의공개법에서 명문화

하고 있는 가장 공통적인 공개회의 면제사유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공통적인 면제사유로는 변호사-고객 특권과 재산 매입 또는 매각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회의공개법에 회의방해 처벌조항, 장애인 관련 규정, 흡연금지 조항을 포함한 주도 있다. 특이하게,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회의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고의적으로 회의를 혼란시키거나 방해하는 사람, 의장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 등은 2급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오리건과 로드아일랜드는 장애인의 회의 장소 접근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다. 오리건의 회의공개법은 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서의 회의개최와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기회의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 통역관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오리건은 공개회의가 열리는 장소에 담배 휴대와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4. 주별 회의공개법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50개 주 모두 각각의 회의공개법을 통해 회의 개최의 사전 공지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회의공개제도는 회의 개최의 정확한 사전 공지로 시작된다는 반증일 것이다. 대부분의 주들은 구체적 절차까지를 제시하고 있으나, 플로리다, 캔자스, 메인, 메릴랜드, 몬태나, 테네시 등 6개 주는 구체적인 사항의 언급 없이 사전 공지의 원칙만을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6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44개 주를 대상으로 회의 개최 사전공지 절차와 요건을 분석해보았다.

첫째, 사전 공지 기간이다. 사전 공지 기간은 정기회의, 비정기회의, 비상회의 등 회의 개최의 정기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다만, 정기회의의 경우, 회의 개최 일정 시간 전의 사전 공지와 함께 연단위 회의

일정을 공표하는 주도 있었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사전 공지 기간을 회의의 유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정기회의 사전 공지 기간은 24시간부터 10일까지 다양하다. 단, 공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주도 13곳이다. 가장 많은 15개 주가 24시간 사전 공지를 규정하고 있고, 48시간 또는 72시간을 명시한 곳이 각각 4개주씩이다. 그 외 아이다호, 웨스트 버지니아, 2개 주가 5일, 하와이가 6일, 앨라바마와 델라웨어가 7일의 사전 공지 기간을 두고 있다. 가장 긴 사전 공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일리노이와 미시간으로, 사전 공지 기간이 10일이다. 특히하게, 캘리포니아는 회의공개와 관련된 복수의 법률인 브라운(Brown)법과 베이글리-킨(Bagley-Keene)법이 각각 3일과 10일로 사전 공지 기간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정기회의의 사전 공지 기간과 각각의 주 이름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정기회의의 사전 공지 기간

사전 공지 기간	주(개)	주명
명시 없음	13	알래스카, 아칸소, 미시시피, 네브래스카, 노스캐롤라이나, 노스다코타, 오키오,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버몬트, 워싱턴, 와이오밍
24시간	15	애리조나, 콜로라도, 코네티컷, 조지아,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네소타, 미조리, 뉴햄프셔, 뉴멕시코,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유타, 위스콘신
48시간	4	인디애나, 메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72시간(3일)	4	네바다, 뉴욕, 텍사스, 버지니아
5일	2	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
6일	1	하와이
7일	2	앨라바마, 델라웨어
10일	2	일리노이, 미시간
3일/10일	1	캘리포니아
합계	44	

한편, 분석대상 44개 주 중, 코네티컷, 미시간, 오클라호마, 로드아일랜드

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7개 주는 일정 기간의 사전공지와 함께, 매년 연 단위의 정기회의의 일정을 사전에 공표하고 있다. 루이지애나, 로드아일랜드,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3개 주의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초 정기회의의 일정을 공표해야 하며, 일리노이 주의 공공기관은 매 회계연도 초에 정기회의의 일정, 날짜, 시간, 장소를 게시하여야 한다. 그 외 미시간 주는 연간 회의일정을 결정하는 매해 첫 회의 개최 후 10일 이내에 그 해의 정기회의의 일정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클라호마 주의 모든 공공기관은 가장 빠른 시기인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 해의 정기회의의 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7개 주의 연 단위 정기회의의 일정 사전 공표 시기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연 단위 정기회의의 일정 사전 공표 시기

주명	공표 시기
코네티컷	매년 1월말
일리노이	매 회계연도
루이지애나	매년 초
미시간	매해 첫 회의 개최 후 10일 이내
오클라호마	매년 12월 15일
로드아일랜드	매년 초
사우스캐롤라이나	매년 초

비정기회의의 사전 공지 기간은 24시간이 13개 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정기회의의 사전 공지 기간을 24시간으로 두고 있는 주가 15곳으로 가장 많았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나머지 다수를 차지하는 주들은 비정기회의의 고지 기간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정기 회의에 준하는 공지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캘리포니아가 특별회의의 공지 기간을 48시간으로 두고 있는 반면, 미시시피는 불과 1시간의 공지로 비정기회의의 개최가 가능하다.

비상회의의 경우, 대부분 주에서 사전 공지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다시 말해, 비상회의는 사전 회의개최 공지 원칙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예외

적 상황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비상회의 개최 이유들 중 가장 공통적인 것은 시민의 생명, 안전, 건강 그리고 재산권의 침해에 관련된 사항이다. 단, 회의록을 통해 비상회의가 개최되어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여, 비상회의 개최의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상회의의 회의록 공개를 명시한 수가 많다. 비상회의의 개최는 가능한 신속하게 언론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해 비상회의 참석 위원에게 비상회의 개최가 공지되는 같은 시각에 회의 개최 공지를 요청한 언론기관과 개인에게 회의 개최가 통지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전 공지 내용이다. 일반적으로 회의 사전 공지는 회의 개최 시각, 날짜, 장소와 함께 회의 의제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회의 의제에 대한 사전 공표다. 대부분의 주에서 공표된 의제 변경 불허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회의를 통해, 사전 공지되지 않은 이슈가 임의로 논의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가 박탈되고, 회의공개법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의제의 변경 또는 추가를 위해서는 해당 기관 또는 위원회 2/3의 표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의제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셋째, 사전 공지 대상이다. 사전 공지를 요청한 일반 시민과 해당 지역의 언론사들은 공공기관과 동등한 위치에서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를 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공지를 요청한 모든 개인과 단체에 성실히 사전 공지를 제공할 의무를 가진다. 다시 말해, 사전 공지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지인 동시에, 이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집단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오하이오의 경우, 개인과 영리기업들에게 회의 공지에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넷째, 사전 공지 방법이다. 사전 공지는 공공기관 건물 내 지정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부터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공지까지 다양하다. 가능한 많은 시민에게 회의 개최를 알리기 위해, 지역 방송과 지역 신문을

망라한 복수의 언론사를 통해 회의 개최를 공표하고 있다.

이상의 주별 회의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표로 정리하여 <부록 1>에 제시하였다.

5. 주별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및 벌칙

미국의 주별 회의공개법은 법령의 실효성을 위해, 법 위반에 대한 다각도의 제재 규정을 상세히 마련하고 있는 한편, 법 위반에 저항할 시민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 규정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6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주별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 및 벌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소송을 통해 회의공개법에 대한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원은 불법적으로 개최된 회의를 통해 결정된 모든 행위 및 조치를 무효화 또는 번복할 것을 명령한다. 이때 변호사 비용지급도 부과될 수 있다. 단, 법원이 회의의 결정 사항을 무효화할 것이냐를 판단할 때의 가장 중요되는 기준은 공적 이익(public interest)이다.

둘째, 시민 누구든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회의공개법 위반이 발생 또는 인지된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시민 누구나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모든 주의 회의공개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이다.

소송은 위법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또는 위법 회의를 인지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가장 긴 기간이 주어지는 알래스카의 경우, 법 위반을 인지한 후 60일 이내, 실제적 위반이 발생한 2년 이내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반면, 인디애나의 경우, 3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각 주별로 30일, 45일, 60일, 90일, 120일 등 다양한 소송제기 가능 기간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실제로 위법이 발생한 날과 위법을 인지한 날을 달리하여 기간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재정, 계약 관련 사항의 경우, 소송 제기 기간을 일반적 행정조치에 대한 무효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보다 짧게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유타 주의 경우, 채권, 지폐 발행과 관련된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이외 다른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 한편, 아이다호의 경우, 회의의 결정 사항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은 30일 이내 제기해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처벌과 영장을 위한 소송은 180일 이내 제기하면 된다.

많은 주에서 공공기관에 위반 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일정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30일, 뉴 멕시코 15일, 미시시피 14일, 노스 타코타 7일, 켄터키 3일의 정정 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소송 중이라도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을 경우, 소송은 기각된다.

셋째, 회의공개법 위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둔다. 하와이 주에서는 회의 개최 6일 이전에 부지사 또는 카운티 서기 사무실의 서면공지가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 부지사 또는 카운티 서기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회 부서의 장에게 위반에 대해 즉시 통지하고, 회의 자체를 취소시킨다. 코네티컷의 경우, 상고인의 이의제기가 회의공개법 위반을 방지하려는 의도였다면, 이의 제기를 받은 후 72시간 내에 심리를 열어야 한다. 또한 이 심리 개최는 개최 48시간 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넷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을 묻는다. 먼저 형사적 책임을 진다. 소송을 통해 회의공개법이 대한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50개 중 38개 주에서 위반 행위에 대해 벌금, 경범죄, 징역형 등을 부과하고 있다. 벌금 부과를 명시한 주가 24개 주로 가장 많았고, 경범죄를 명시한 주가 7개 주, 벌금과 경범죄를 함께 명시한 주가 5개 주다. 회의공개법 위반에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주는 오클라호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텍사스 등 3개 주다.

벌금의 경우, 로드 아일랜드는 최고 5,000USD부터 20USD까지 벌금의 액수가 다양하다. 단 로드 아일랜드는 벌금을 개별 구성원이 아닌 기관에 부과한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벌금을 위원회 구성원에 부과하고 있다. 최고 벌금액을 500USD와 100USD로 정한 주가 각각 6개로 가장 많았다. 4개 주에서는 1차 위반 시의 벌금과 그 후 반복되는 위반에 대한 벌금의 액수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표 6〉 회의공개법 위반시 처벌 및 벌금

유형	주 (개)	양형	기타	
벌금	24	1	최고 5,000USD(기관에 부과)	소송 시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쪽에 지급 책임이 있음
		1	최고 1,000USD 또는 월급여의 절반	
		2	최고 1,000USD	
		6	최고 500USD	
		1	100~500USD	
		1	최고 300USD	
		6	최고 100USD	
		1	20~100USD	
		1	벌금(변호사비용 포함/특정되지 않음)	
		1	1차 위반 250~1,000USD/ 그 후 위반 1,000~2,500USD	
		1	1차 위반 1,000USD/ 2차 위반 2,000USD	
		1	1차 위반 500USD/ 2차 위반 100~1,000USD	
		1	1차 위반 100USD/ 그 후 위반 100~500USD	
경범죄	7	2	경범죄	
		1	2급 경범죄	
		2	C급 경범죄	
		1	B급 경범죄	
		1	1차 위반 4급 경범죄/ 그 후 위반 3급 경범죄	

벌금 + 경범죄	5	1	500USD+2급 경범죄
		2	500USD+경범죄
		1	적정 벌금+경범죄
		1	750USD+경범죄
벌금 + 징역형	3	1	500USD+1년 징역형
		1	1차 위반 100USD+30일 징역 / 2차 위반 200USD+징역
		1	100~500USD+1개월~6개월 징역형
명시 없음	11		
합계	50		

한편, 12개 주에서는 회의공개법 위반을 다양한 등급의 경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경범죄만을 명시한 주가 7곳, 경범죄와 함께 벌금을 부과한 주가 5 곳이다. 경범죄는 2급, C급 또는 B급 경범죄가 적용된다. 미국 연방법에 의하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C급 경범죄에 최대 30일의 구금과 5000USD의 벌금, B급 경범죄에 최대 6개월의 구금과 50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만 볼 수는 없는 처벌이다. 이에 더해, 3개주는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하여 벌금과 함께 구체적으로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오클라호마의 경우, 최고 500USD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경우, 1차 위반에 대해 100USD 벌금과 30일 징역형, 그 후 법 위반에 대해 200USD의 벌금과 징역형, 텍사스의 경우, 100~500USD의 벌금과 1개월과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부과한다(〈표 6〉 참조).

또한, 공공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변호사 비용은 기관 또는 개별 구성원에게 부과된다.

다섯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자는 회의에서 제외된다. 애리조나, 아이오와, 미네소타, 오하이오 주 등에서는 법을 위반한 공직자 혹은 위원회 위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아이오와 주와 미네소타 주에서는 3번 위반한 자, 애리조나와 오하이오에서는 단 한 차례라도 법을 위반한 자를 면직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여섯째, 위원회의 기능을 통해 시민을 보호한다. 앞서 소송을 통한 이의 절차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소송을 통한 이의 절차가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리한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시민들이 소송을 선택할 수 있을까? 소송을 통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또는 패소했을 경우, 시민은 변호사 비용까지를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네티컷의 정보공개위원회(Freedom of Information Commission), 일리노이의 공적접근카운슬러(Public Access Counselor), 미시시피 윤리위원회(Mississippi Ethics Commission), 뉴욕의 열린정부위원회(Committee on Open Government), 오리건 정부윤리위원회(Oregon Government Ethics Commission), 사우스 다코타 회의공개위원회(South Dakota Open Meetings Commission) 등 위원회의 기능에 주목해 본다. 시민은 소송 대신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는 시민을 대신해 문제를 해결할 법적 권한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코네티컷의 정보공개위원회는 회의공개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기관 또는 개인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한 회의에 따른 결정과 조치들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다만, 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우스 다코타 회의공개위원회는 주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5명의 법률가로 구성된다.

이상에서 논한 50개 주별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소송)제기 절차 및 벌칙의 특징들을 정리하여 <부록 2>에 제시하였다.

6. 우리나라 회의공개제도를 위한 시사점

이상에서 본 연구는 미국 50개 주 회의공개법의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회의 자체’가 아니라 ‘회의록의 생산과 공개’에 관한

규정만 있는 상황에서 앞의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회의공개법의 본격적 논의를 위한 7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한다.

첫째, 회의공개제도는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의 올바른 방식과 충분한 기간으로부터 시작된다. 공공기관은 정기회의, 비정기회의, 비상회의 등 회의 성격에 따라 사전공지 절차 및 요건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정기회의 일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이 접근하기 쉽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모두를 사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정기회의는 사전에 정한 일정에 따라 개최되어야 하며, 이와 별도로 개별 회의 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 게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비정기회의가 열릴 경우, 충분한 사전 공지 기간을 두고 개최되어야 하며, 비정기회의가 회의공개법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해야 한다.

비상회의 역시 비정기회의와 마찬가지로 회의공개법의 취지를 우회하는 방법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비상회의 개최 후, 지체 없이 회의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비상회의가 필요했던 상황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또한 비정기회의와 비상회의의 개최 공지는 회의 참석 당사자들에게 통지되는 동시에, 시민과 언론에 다양한 방식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둘째, 사전공지의 충실한 내용은 회의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한다. 회의개최에 대한 사전 공지는 회의 시간, 날짜, 장소, 의제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공지 내용에 대한 변경이 발생할 시 이를 지체 없이 재공지하여야 한다. 이미 공표된 의제를 변경하여 새로운 의제를 논의하는 것은 불허되어야 한다. 다만, 이미 공표된 의제의 변경이 부득이한 긴급한 상황이 있을 경우, 긴급상황에 대한 설명책임성 충족과 회의 참석자 2/3의 표결 찬성을 요건으로 의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셋째, 사전 공지의 방식과 대상은 가능한 폭넓고 다양해야 한다. 사전 공지를 수발신하는 데 있어 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시민은 회

의 개최의 사전 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공공기관은 이를 전달할 의무를 가진다. 이 권리와 의무는 회의공개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넷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의 모든 결정은 무효다. 회의공개법 위반 시, 위반한 회의에서 결정된 모든 행위 및 조치는 무효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다섯째, 시민 누구나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이의를 손쉽게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의 정보공개위원회 또는 회의공개위원회를 행정위원회의 형식으로 두고, 회의공개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법 위반을 확인한 경우, 공공기관 스스로 위법 행위를 바로잡을 것을 명령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적정 기한을 부여한다. 만약 위원회의 명령을 기한 내 시행하지 않은 경우, 공공기관 또는 구성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행정적 제재를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정보공개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법 적용이 정당하였음을 확인한 경우, 이의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단,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시민과 공공기관 양측 모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여섯째,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회의공개법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위반한 자에게는 적정 벌금을 부과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회의공개법을 고의적, 악의적으로 위반한 자는 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하며, 회의공개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자는 이를 가중 처벌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만을 포함하는 요지작성 형태의 회의록이 다수였는데, 주별 회의공개법 일반 개요에서 살펴보았듯이 회의 중 작성된 회의록에는 참석한 사람과 논의된 주제, 행해진 투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한 녹음이 가능해야 하며 이러한 회의록과 녹음 자료는 시민이 접근 가능해야 한다.

7. 나가는 글

우리나라에서 회의공개법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차원에서조차 마련된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행정기관 어느 한 곳도 스스로 회의 자체를 공개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앞서 논하였듯이, 「기록물관리법」 제17조와 동법 시행령 제18조가 회의록 생산과 공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중요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회의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는 속기록, 녹음기록보다는 간략한 내용만을 기재하는 형식적 요약작성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최정민, 김유승 2017).

2017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결정의 주된 사유는 첫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28%), 둘째, 법령상 비밀 또는 비공개(25%), 그리고 셋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행정자치부 2017, 21).

이와 같이,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는 공무원의 비공개 결정판단에 자주 등장하는 사유이자, 가장 논쟁적인 비공개 사유 중 하나이다. 계획 중이거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공정보가 공개되어 시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공공정보의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사안은 결론뿐만 아니라 과정의 공개와 시민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배제된 정책 결정과 권력 남용이 남긴 폐해를 아프게 경험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시민주권시대의 알권리를 한걸음 진전시키고, 공익을 확장시키는 도구로서 회의공개제도에 주목했다. 회의의 공개는 커녕, 회의록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실정에서 회의공개제도에 대한 논의는 부질없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진정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 누리고자 한다면, 회의공개제도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미국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문서의 공개를 규정하는 ‘정보공개법’(5U.S.C §552)과 회의공개법을 규정하는 ‘회의공개법’(5U.S.C §552b)이라는 양날개로 구성된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20년간 한 쪽 날개로만 버텼다. 과정을 보여 주지 않아도 결과를 내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 스스로를 위안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과정 없는 결과의 부질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우리에게는 공공기관의 정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알권리가 있다. 과정은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대상이다. 민주주의는 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로 완성된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알권리를 완성시켜줄 또 하나의 날개이다.

〈참고문헌〉

- 김유승. 2017. 미국 회의공개법,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오픈세미나. 2017.5.19. 서울NPO지원센터.
- 이재진. 2005. 저널리즘영역에 있어서의 알권리의 기원과개념변화에 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5(1), 231-264.
- 이혜진, 정은경. 2012.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137-153.
- 손태규. 2015. 왜 한국에도 회의공개법이 필요한가. 『공법학연구』, 16(1), 163-186.
- 최정민, 김유승. 2018. 회의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기관 지정회의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55, 307-334.
- 변주연. 2008. 공공기관의 회의록 생산, 공개 제도화 연구: 미국의 회의공개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7, 203-245.
- 행정자치부. 2017. 2016 정보공개연차보고서.
- Nadler, Judy and Schulman, Miriam. 2006. Open Meetings, Open Records, and Transparency in Government.

〈참고 사이트〉

〈<https://www.scu.edu/ethics/focus-areas/government—ethics/resources/what-is-government-ethics/open-meetings-open-records-transparency-government/>〉 [cited 2018.6.29].

〈부록 1〉 주별 회의공개법 사전 공지 요건 및 절차

주명	내용
앨라바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적 회의 개최 최소 7일 전에 사전 공지해야 함 • 앨라바마 주 국무부 웹사이트에 공표해야 함 • 회의공지는 회의 일시와 장소를 포함. 단, 의제는 제공하지 않음 • 개인 또는 자산에 해를 끼치는 등 예외적 경우, 비상회의 개최를 허용함
알래스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거, 모든 회의는 합당한 공지를 제공하여야 함 • 공지는 날짜, 시간, 장소, 화상회의 시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 공지는 미디어를 통해 알려져야 하며, 공공기관 사무소 또는 지정 장소에 게시되어야 함
애리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회의 개최는 일요일을 제외한 최소 24시간 전에 공표되어야 함 • 비상회의는 원칙적으로 불허. 다만, 예외적인 경우, 결과를 24시간 내 공표하여야 함 • 회의 공지는 회의 의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공표된 의제 외의 것은 회의에서 논의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아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거, 공공기관은 회의 시간과 장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누구에게나 제공하여야 함 • 비상회의는 2시간 전 지역 언론에 공표하여야 함
캘리포니아	<p>Brown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은 회의개최 최소 3일 전에 정기 회의에 대한 의제와 공지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함 • 게시에는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될 모든 주제를 포함함 • 정부는 정기회의 개최 최소 3일(72시간) 전에 메일로 공지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지를 발송하여야 함 • 게시된 의제는 회의 내용을 제한하기 위해 계획됨. 게시된 의제 외의 새로운 주제는 회의에서 논의될 수 없음 • 단, 위원회의 2/3이 표결로 긴급성을 인정한 경우, 새로운 의제를 논의할 수 있음 • 특별회의는 24시간 사전 공지(의제 포함)로 개최될 수 있음 • 비상회의는 1시간 사전공지로 개최될 수 있음. 단, 공공의 건강 또는 안전에 심대히 침해가 있는 경우에 한함
	<p>Bagley-Keene Ac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모든 회의 개최는 10일 전 서면과 온라인으로 공표되어야 함 • 공지는 회의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함 • 공지는 회의의 시간, 날짜, 장소를 포함하여야 함 • 공개회의와 특별회의의 경우, 회의에서 논의될 사항의 목록이 공지되어야 함. 이를 통해, 회의에서 논의될 주제를 한정함 • 단, 위원회의 2/3의 표결로, 긴급 의제에 대한 논의를 허용함 • 단, 법률은, 진행 중인 소송과 입법, 새로운 법률 의견, 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부동산의 매입과 판매, 시험 인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경우, 10일 전 공표 없는 특별회의의 개최를 허용함 • 그럼에도, 주정부는 특별회의의 개최에 대한 공지를 언론과 공지를 요구한 개인에게 2일 전에 공지하여야 함 • 단, 공공의 건강과 안전이 심대히 침해되는 1시간 공지로 비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 이러한 비상회의의 회의록은 10일 이내에 언론에 고지되어야 함

콜로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공지는 개최 24시간 전에 공공기관 내 지정된 장소에 게시되어야 함 • 공지 게시를 위한 지정 장소는 매년 첫 번째 회의에서 정해짐 • 의제 관련 정보도 공지에 포함되어야 함
코네티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주정부 기관은 매년 1월말까지 모든 정기회의 일정을 공표하여야 함 • 기관은 정기회의 일정을 서면을 제공하여야 함 • 정기회의의 의제는 최소 회의개최 24시간 전에 게시되어야 함 • 단, 위원 2/3의 표결로 의제는 무시될 수 있음 • 특별회의의 경우, 24시간 고지를 지키지 않을 수 있음 • 공지는 시간, 날짜, 논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의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의제 외 사항은 논의할 수 없음 • 비상회의는 사전공지 없이 개최될 수 있음. 단, 72시간 내에 긴급의 적합성이 명시된 회의록을 게시하여야 함
델라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회의 개최는 최소한 7일의 사전 공지가 필요함 • 공지는 시간, 장소, 잠재적 의제를 포함하여야 함 • 의제는 회의 전에 변경될 수 있음 • 특별회의, 일정이 재조정된 회의의 개최를 위해서는 24시간 사전 공지가 필요함
조지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의 공지 게시를 유지할 것을 요구받음 • 모든 기관은 회의 시작 최소 24시간 전에 공지를 반드시 게시하여야 함 • 기관들은 회의 공지를 요구하는 언론기관에 연락을 취할 의무가 있음 • 단, 24시간 공지를 지키지 못하는 비상회의를 예외적으로 허용: 회의록에 비상회의 개최사유 명시되어야 함 • 법은 기관이 회의 이전, 합당한 기간 내에 의제를 게시할 것을 요구함. 그러나 의제는 구속력이 없으며 기관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자료를 다룰 수 있음 • 예상되는 모든 문제의 의제는 요청 시 가능해야 하며 가능한 회의 이전에 회의 장소에 반드시 게시되어야 함
하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는 정기, 특별, 또는 일정이 조정된 회의 등의 서면 공지를 제공하여야 함 • 공지는 회의의 의제, 날짜, 시간, 장소를 포함하여야 함 • 공지는 회의 개최 최소 6일 전에 제출되어야 함 • 제출된 의제는 변경할 수 없음. 단, 위원 2/3의 표결로 의제를 추가할 수 있음 • 공공의 건강, 안전, 행복에 대한 즉각적 침해가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위원 2/3의 표결로 비상회의를 개최함
아이다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정부 기관의 회의는 5일의 공지가 요구됨 • 공지는 시간, 날짜를 포함함 • 회의의 의제는 회의 개최 48시간 내에 게시됨 • 기관이 정기적 회의 일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1년 중 정해진 시점에 발표하여야 함 • 법은 개인 또는 자산에 대한 상해, 현저한 재정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회의의 개최를 허용함 • 특별 회의는 24시간 공지만이 요구됨 • 특별 회의의 공지는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의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일리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매 회계연도 초에 정기 회의의 일정, 날짜, 시간, 장소를 게시하여야 함 • 정기 회의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10일 전에 고지되어야 함 • 회의 개최 48시간 전에 의제, 날짜, 시간, 장소를 포함한 공지를 게시하여야 함 • 비상회의의 경우 48시간 공지의 예외가 적용됨. 단, 가능한 신속한 공지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실질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앞선 회의 이후 24시간 이내, 앞선 회의의 결정에 따라 소집되는 후속 회의의 경우, 의제의 변화가 없다면, 48시간 공지 규정의 예외가 적용됨

인디애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유형의 공공회의는 날짜, 시간, 장소를 최소한 회의 개최 48시간(토/일 제외) 전에 공표하여야 함 • 단, 재소집된 회의에는 48시간 공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정기 회의는 1년에 1회 고지됨 • 생명, 재산이 위협받고, 즉각적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비상회의의 개최가 허용됨 • 비상회의의 개최는 위원들에게 고지되는 동시에 언론에도 고지하여야 함 • 고지 규정은 주 의회에 적용하지 않음
아이오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은 모든 회의에 있어 최소 24시간 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음 • 공지는 시간, 장소, 잠재적 의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비상회의가 허용됨. 단, 비상회의는 회의록을 통해 긴급성을 명시하여야 함
켄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모든 회의는 정기 일정에 개최되어야 함. 이 일정은 공공에 공개되어야 함 • 법은 정기 회의 외에 비정기적 특별회의를 허용함 • 공공기관은 최소 24시간 전에 회의개최를 공표하여야 함 • 회의 공지에는 의제가 포함됨. 의제는 회의의 논의 사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함 • 공공기관의 24시간 공지는 공지를 요청한 뉴스 기관에도 제공됨
루이지애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초 정기 회의 일정을 공표하여야 함 • 기관들은 모든 정기회의, 특별회의에 대한 24시간 서면 공지를 제공하여야 함. 공지에 의제 포함함 • 공표된 의제 외의 것을 논하기 위해서는 위원 2/3의 표결이 필요함 • 공공기관은 회의 공지를 요청한 언론기관에 공지를 해야 함
메사추세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기관은 회의 개최 48시간 전에 회의 개최를 공표함
미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회의의 일정은 이후 회의일정을 결정하는 때에 첫 회의 개최 후 10일 이내에 공표함 • 정기회의의 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3일 이내에 공지함 • 변경된 정기회의 18시간 전에 공지가 반드시 게시되어야 함 • 공공기관은 원 회의의 36시간 안에 고지없이 회의를 재소집할 수 있음 • 생명 또는 재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원 2/3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미네소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들은 주 사무실에 정기 회의의 일정을 게시할 의무가 있음 • 정기회의, 특별회의의 변경 시, 회의 24시간 전, 공지를 게시하여야 함 • 이 공지는 공지를 요청한 개인들에게 발송됨 • 비상회의는 24시간 사전 공지보다 짧은 공지로 개최될 수 있음. 단, 공지를 요청한 미디어에 최선의 노력으로 연락을 취해야 함 • 원 회의에서 공지된 경우, 회의는 후회되거나 재소집될 수 있음
미시시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에 정기회의의 일정을 수립할 것을 요구함. 단, 정기회의를 위한 추가 공지는 요구하지 않음 • 특별회의의 경우, 1시간 공지를 공공 장소에 게시함 • 화상회의의 경우, 5일 간의 공지를 제공하여야 함 • 화상회의의 공지는 회의의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비상회의의 경우, 사전 공지 없이 화상회의를 열 수 있음

미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회의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최소 24시간 공지를 제공하여야 함 • 공지는 공공기관 사무실 내에 게시되어야 하며, 공지를 요청한 뉴스 기관들에 전달되어야 함
네브래스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공공기관에 회의 시간, 날짜, 의제를 포함한 적합한 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 의제는 주정부 회의 24시간 이내 변경할 수 없음 • 공공기관은 회의 공지를 요청한 뉴스 매체의 목록을 유지해야 하며, 회의를 공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네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은 공적 회의에 앞서 3일 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받음 • 공지는 시간, 장소, 의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법은 공지를 요청한 모든 개인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회의 개최를 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뉴햄프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기관은 회의 24시간 전에 공공 사무실과 온라인 또는 지역 신문에 공지를 게시하여야 함 • 비상회의는 허용되나, 회의록에 긴급의 사유가 명시되어야 하며, 이 모든 시도들은 공공에 고지되어야 함
뉴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에게 모든 회의의를 위한 48시간 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 공지는 회의의 시간, 장소, 의제를 포함함 • 공지는 공공기관 사무실에 게시하고, 최소한 두 곳의 신문에 전달되어야 하며, 주 국무장관 또는 지역 사무관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회의 공지를 요청한 모든 개인에게 전달되어야 함 • 비상회의는 기관의 2/3 표결로 소집될 수 있음 • 비상회의의 주제는 긴급한 안전에 국한되어야 하며, 공지는 반드시 가능한 신속히 게시되어야 함
뉴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기관은 모든 회의의 적합한 공지를 제공하여야 함 • 적합한 공지는 매년 초 각각의 기관에 의해 결정됨 • 공지는 회의 의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회의 의제는 회의 개최 최소 24시간 전에 공표되어야 함 • 공공기관은 공표된 의제만을 회의에서 다룰 수 있음. 단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서는 예외임 • 원 회의에서 공지된 경우, 별도의 공지 없이 회의는 비공개되거나 재소집 될 수 있음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에게 회의 일정을 위한 일반적으로 1주일 전, 최소 72시간의 공지를 제공할 것을 요구함 • 공지는 눈에 띄는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지역 뉴스 매체에 전달되어야 함
노스 캐롤라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기관은 지역 또는 주정부 사무실에 정기회의 일정을 관리하여야 함 • 정기 회의 일정의 변경 시, 새로운 일정의 첫 번째 회의 전 7일의 공지가 요구됨 • 정기 일정에서 벗어난, 비정기 회의의 경우, 48시간 전에 공지가 게시되어야 함 • 공지는 부서 지역사무소 내에 게시되어야 하고, 모든 뉴스 기관과 공지를 요청한 개인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 비상회의는 48시간 공지보다 짧은 시간에 소집될 수 있음. 단, 공지는 반드시 가능한 신속히 뉴스 미디어에 전달되어야 함
노스다코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기관들에 회의 정기 일정을 수립할 것을 장려함 • 정기 일정 외의 회의는 기관 구성원에 전달되는 동시에 뉴스 기관에도 제공되고 게시되어야 함 • 비상회의의 경우 공지를 요청한 뉴스 매체에 공지를 해야 함

오하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공이 접근할 수 있는 정기 회의 일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특별회의를 위해, 공공기관은 공지를 요청한 모든 미디어 기관에 24시간 공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함 • 개인과 영리 기업들은 적정 수수료로 회의 공지를 요청하고 받을 수 있음
오콜라호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에 의거 모든 공공기관은 매 12월 15일에 다음 해의 정기회의 일정을 마련해야 함 • 정기회의 일정의 변경 시, 주 국무장관 또는 서기에 10일의 고지가 요구됨 • 일정 고지 이외에 모든 회의는 회의 24 시간 전에 공청회 사무실에 24 시간 공지를 게시해야 함 • 이 공지에는 회의에서 논의될 주제를 제한하는 의제가 포함되어야 함 • 재 회의를 위한 공지는 원 회의에서 제공되어야 함 • 제출된 일정에 나타나지 않는 회의는 회의 개최 48시간 전에 외부에 게시해야 하며, 요청한 모든 개인 및 뉴스 기관에 통보해야 함 • 법은 모든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려고 할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회의를 허용함
오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에 회의에 관한 적합한 공지를 대중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함 • 특별회의의 경우, 공지를 요청한 개인과 미디어에 최소 24시간 공지를 주어야 함 • 비상회의의 경우, 24시간 공지보다 짧은 시간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단 회의록에 긴급성에 대한 설명을 담아야 함
펜실베이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들은 모든 회의를 광고하고 공지를 제공해야 함 • 장소, 시간, 날짜를 포함하여 3일 전에 각 회계 연도의 첫 정기 회의를 공개해야 함. 그런 다음 나머지 정규 모임 일정을 공개해야 함 • 기관은 회의 시작 24시간 전, 각 특별회의 또는 각 정기 또는 특별회의 일정에 대해 공고해야 함 • 비상회의의 경우, 공고는 필요하지 않음 • 공지는 사무실 밖의 기사나 지역 신문 기사로 제공될 수 있음
로드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초에 정기 회의 일정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 • 공공기관은 회의 시간, 날짜, 의제를 48시간 전에 통보해야 함 • 의제는 과반수 득표로 회의 중에 변경 될 수 있음. 단, 유익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의제를 변경할 수 없는 학교위원회는 제외됨 • 공공기관은 주요 회의 장소 외부에 공지문을 게시해야 하며, 학교위원회는 해당 지역 신문사에 공지를 게시해야 함 • 비상회의는 공공기관의 다수결로 개최 될 수 있음. 단, 가능한 신속히 공지를 게시하고, 회의록에 48 시간 미만의 통지로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이유를 기록하여야 함
사우스 캐롤라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기관은 각 연도의 시작에 정기 회의 공지를 게시해야 함 • 공공기관이 회의 24시간 전에 의제를 게시 할 것을 요구함 • 모든 일정 변경 또는 특별 회의는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함 • 공공기관은 사무실에 공지문을 게시하고, 회의 개최 공지를 요청한 개인 또는 뉴스 기관에 통지해야 함
사우스 다코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공공기관은 회의 시간, 장소, 의제를 포함하여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함 • 공공기관은 사무실의 중요한 위치에 고지를 게시하고, 통지를 요청한 모든 언론 매체에 연락해야 함

텍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관은 대중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공개 회의 의제를 포함하여 72시간 전에 통보해야 함 • 긴급사태나 재난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공공기관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사전 공지없이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음
유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기관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 회의 시간, 장소, 제안된 의제를 포함한 공지를 제시해야 함 • 공지는 공공기관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게시해야 하며, 공지를 요청한 지역신문 및 모든 매체에 보내야 함 • 공공기관은 최소 1년에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함 • 법은 24시간 공지 시간 이내에 개최되는 비상회의를 허용함
버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대한 공지를 게시할 것을 요구함 • 법령에 의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 이외의 특별 회의에는 공공기관의 관할 구역 내 3개 이상의 장소에 게시되어야 하는 24시간의 공지가 수반되어야 함 • 법은 다음 회의가 이전 회의에서 발표된다면 사전 통지없이 회의를 재개 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은 공지를 요청한 모든 뉴스 기관에 통지해야 함
버지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회의 개최 최소 3일 전에 모든 회의에 대한 공지를 게시하도록 요구함 • 특별 또는 비상회의의 경우, 공공기관의 구성원에게 공지가 통지되는 동시에 공지를 요청한 모든 개인에게도 통지되어야 함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정기 회의 일정을 통보하도록 요구함 • 이 일정은 워싱턴 주 등록부에 매년 1월 중 또는 그 이전에 게시되어야 함 • 특별 또는 재조정 회의는 반드시 공공기관 본부에 게시하고 모든 지역 언론기관에 24시간 통보해야 함 • 연기된 회의는 재조정될 수 있지만 미리 24 시간 전에 통보해야 함
웨스트 버지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 회의에 합리적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회의 및 특별회의의 발표에 관한 자체 정책을 개발하도록 요구함 • 주 행정부는 5일 전에 주 등록부에 회의를 게시해야 함
위스콘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기관은 시간, 날짜, 장소(가능한 한 정확하게) 및 회의 주체를 표시하여 모든 회의를 공개해야 함 • 기관이 회의 일부가 비공개될 것으로 예상하면 회의에서 논의될 주제와 함께 이를 표시해야 함 • 기관은 공지를 대중, 회의 공지에 대한 서면 요청을 한 뉴스 매체 및 지정 공식 신문에 배포하고 소통하여야 함 • 공지는 이와 같은 요건들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지 않은 한, 회의 시작 최소 24시간 전에 제공되어야 함
와이오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은 모든 기관이 정기 회의에 관한 자체 규칙 및 규정을 또는 특별 회의에 관한 성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특별회의의 공지는 모든 지역 뉴스기관에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회의 시간, 날짜, 논의 주제의 목록을 특정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회의에서 제공한 공지에 따라 회의를 휴회할 수 있음 • 비상회의는 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함 • 비상회의에서 취한 모든 조치는 일시적이므로 다음 공개 회의에서 비준되어야 함

〈부록 2〉 주별 회의 위반에 대한 처벌 내용

주명	내용
앨라바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앨라바마 주 시민 누구나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피고가 이의가 제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첫 번째 심리가 진행됨 • 피고가 이의제기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17일 이내 심리가 진행되어야 함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회의 구성원들에게 최고 1,000USD 또는 월급어의 절반에 해당하는 벌금을 강제할 권리가 있음 • 정부기관은 위반자 개인들의 법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음 • 법 위반을 인지 후 60일 이내, 실제적 위반이 발생한 2년 이내 소송 제기하여야 함
알래스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소송은 180일 이내 고등법원에 제기되어야 함 • 단, 기관은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소송을 피할 수 있음 • 법원은 법 위반 여부를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를 기준으로 판단함
애리조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에 영향을 받는 시민 누구나 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카운티 고등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 •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법원은 위반자, 이를 인지하고도 도운 자,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거나 동의한 자에게 최고 500USD의 벌금을 부여할 수 있음 • 법원은 위반자를 직무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들은 무효화할 수 있음
아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은 C급 경범죄로 간주됨. • 법원은 피고의 변호사 비용을 평가할 권리가 있음. 단, 국가를 상대로 청구할 수 없음
캘리포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은 경범죄로 간주됨 • 개인은 90일 이내 법 위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단, 소송에 앞서 공공기관에 위반사항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요청을 받은 후 30일 이내 위반을 바로잡아야 함 • 30일 경과 후, 개인은 15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소송 중이라도, 공공기관이 잘못을 바로잡았을 경우, 소송은 기각됨
콜로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하여 원고 비용과 변호사 비용 지급 판정을 내릴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코네티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은 공공기관의 회의공개법 위반을 인지 후 30일 이내 정보공개위원회(Freedom of Information Commission)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정보공개위원회는 30일 이내 청문회를 열고, 60일 이내 위반 여부를 판단함 • 상고인이 법 위반을 막으려고 할 경우, 72시간 내에 심리를 열고, 심리 개최, 최소 48시간 전에 이를 공표함 • 정보공개위원회는 기관 또는 개인에 20~100USD의 벌금을 부과함 • 정보공개위원회는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음 • 정보공개위원회의 결정은 지방법원, 이후 상고법원에 이의제기할 수 있음

델라웨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이 위반된다면, 델라웨어 거주민은 주 법무장관에 이를 고지할 수 있음 • 주 법무장관은 이에 대해 20일 이내, 법 위반 여부를 답변하여야 함 • 만약 법 위반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민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무장관에게 소송을 제기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단, 법무장관이 어떤 결정을 하든 시민은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 • 시민은 법 위반 발생 후 6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함 • 법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하고, 변호사 비용 지급 판정을 내릴 수 있음
플로리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은 500USD의 벌금해 처해짐 • 회의공개법 위반은 2급 경범죄로 간주됨
조지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단체 누구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 또는 그 구성원을 상대로 법 위반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기관 또는 개인에게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음 • 회의공개법 위반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500USD의 벌금이 부과됨
하와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 최소 6일(6 calendar days) 이전에 부 주지사 또는 카운티 서기의 사무실의 서면 공지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부 주지사나 카운티 서기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회 부서의 장에 위반에 대해 즉시 통지하여야 함 • 이 경우의 회의는 취소됨 • 의장 또는 부사장은 회의 취소 공지가 회의장소에 고지될 것, 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해야 함 • 회의공개법의 위반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적절한 벌금이 부과됨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하고, 변호사 비용 지급 판정을 내릴 수 있음
아이다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법무장관과 지방 검사들은 회의공개법을 강제할 책임을 짐 • 회의공개법을 위반 한 회의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소송은 3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함 • 다른 처벌과 영장을 위한 소송은 180일 이내 제기되어야 함 • 공공기관 스스로 위반을 인지하고 위반을 개선하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위반을 타개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개인에게는 500USD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일리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회의 60일 이내 또는 이를 인지한 후 60일 이내, 누구든 위반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개인은 위반을 발견한 60일 이내 공적 접근 카운슬러(Public Access Counselor)에 제기한 소송을 심의해줄 것을 주 법무장관 사무실에 요청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을 선제적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된 회의의 기록을 공표하고, 비공개회의에 따른 조치의 무효를 명령할 수 있음 • 카운슬러는 해당 기관에 7일 내 응답할 것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카운슬러는 그 문제에 대해 구속력있는 의견을 표명할 주 법무장관에게 파일을 제출함 • 회의공개법 위반은 C급 경범죄로 간주됨
인디애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이 위반된 경우, 개인은 위법한 회의 개최 3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 법원이 회의의 의한 결정을 취소할 때 고려되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 기준들의 주요 근거는 공적 이익(Public Interest)임

아이오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직 기관에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위원회의 구성원들에게 100~5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의 비공개에 반대 표결한 개별 구성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을 3번 위반한 개인을 위원을 직무에서 제외할 수 있음
캔자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은 캔자스 법무장관, 지방 검사, 또는 어떤 개인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 • 위반자는 최고 500USD의 벌금을 부과받음. • 21일 내에 소송이 제기된다면, 위법한 회의에 따른 모든 조치는 반복될 수 있음
켄터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이 위반되었다고 인식한 개인은, 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함 • 해당 공공기관은 3일 안에 위법 사항을 시정할 수 있음 • 만약 공공기관이 시정에 실패하거나, 거절한다면, 60일 이내에 주 법무장관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주 법무장관은 10일 이내 요청에 답변하여야 함 • 주 법무장관의 결정에 30일 이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다면, 이 결정은 법적 구속력을 가짐 •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한 법적 소송은 법 위반으로부터 60일 이내 순회법원에 제기되어야 함 • 순회법원은 회의공개법의 위반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주 법무장관 결정의 재고를 요청함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최고 1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루이지애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법무장관, 지방 검사, 누구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위반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각각의 위반에 대해 최대 100USD의 벌금과 변호사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에는 최대 500USD 벌금이 부과됨
메릴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구든 회의공개법 위반을 인지한다면, 위반을 발견한 45일 내에 순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위원회의 개별 구성원에 최대 100USD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메사추세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명 이상의 시민, 주 법무장관, 지방 검사는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만약 21일 이내 소송이 제기된다면, 판사는 불법 회의에 따른 모든 조치를 무효화시킬 수 있음 • 법원은 기록을 공표하고, 앞으로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미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되었다고 인지한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이 공식 회의록 공표 후 60일 이내, 계약과 관련된 사항 30일 이내 제기된 소송에서 회의공개법의 위반사항을 확인한다면, 공공기관의 결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 • 판사는 각각의 위반에 대해 최고 10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두 번째의 위반에 대해서는 최고 20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개별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최고 500USD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이 부과됨
미네소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회의공개법을 위반했다고 인지한다면 누구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개별 공무원에 최고 300USD의 벌금을 부과함 • 동일 공공기관에서 회의공개법을 3번 위반한 공무원의 경우, 그를 면직시킬 수 있음
미시시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은 미시시피 윤리위원회(Mississippi Ethics Commission)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 윤리위원회는 이를 기관에 고지하고, 기관은 14일 내에 응답하여야 함 • 응답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이의제기를 기각하거나 심리를 개최함 • 윤리위원회는 위반에 대해 최고 100USD의 벌금을 부과함 • 개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형평법 법원(chancery court)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미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이 위반되었다고 인지한 경우, 피해받은 개인, 주 법무장관, 지방 검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법 위반에 대해 최고 1000USD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이 판단의 기준은 공적 이익(Public Interest)임 • 공공기관은 회의공개법 위반으로 고발(기소)된 공무원의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
몬태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이 회의공개법을 위반했다고 인지한다면 누구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소송은 불법 회의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네브래스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브래스카 시민 누구나 공공기관의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률 위반 120일 이내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최종 조치를 무효로 하기 위한 소송은 조치 후 1년 내에 끝나야 함 •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1차 위반의 경우 4급 경범죄, 그 후 위반의 경우 3급 경범죄로 유죄를 받음
네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법무장관 또는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는 무효로 간주됨 • 불법 회의에 참여한 공무원은 경범죄에 해당함

뉴햄프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의 위반으로 피해입은 개인은 누구나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뉴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의 위반을 인지한 누구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 따른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법을 위반한 공무원에게 1차 위반의 경우 100USD, 그 후의 위반의 경우 100~500USD를 부과할 수 있음
뉴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개인은 먼저 공공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함 • 만약 공공기관이 15일 이내 위반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개인은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을 위반한 개별 공무원은 경범죄로 유죄가 되며, 최고 500US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뉴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열린 정부 위원회(Committee on Open Government)는 회의공개법과 관련된 문제에 자문의견을 공표할 권한을 가짐
노스 캐롤라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판사는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지거나 논의된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노스다코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90일 이내 법무장관에게 회의공개법의 위반에 대해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 법무장관이 위반을 확인한 경우, 기관은 7일 이내 위반을 바로잡아야 함 • 만약 기관이 법무장관의 결정을 수행하는 데 실패한다면, 기관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 고등법원의 소송은 위법이 일어나고서 60일 이내, 법무장관의 의견 공표 후 30일 이내 제기되어야 함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변호사 비용과 최고 10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오하이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최고 500USD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 법원은 위반자를 직무에서 제외할 수 있음
오클라호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최고 500USD의 벌금과 1년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음
오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누구나든 회의공개법의 위반에 대하여 60일 이내 순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개인은 사건을 심리하고 민사처벌을 할 수 있는 오리건 윤리위원회(Oregon Government Ethics Commission)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펜실베이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 개최로부터 30일 또는 불법행위를 인지로부터 30일 이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 위반자에게는 최고 100US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로드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드 아일랜드 주 시민은 누구나 회의공개법 위반에 대해 주 법무장관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단, 주 법무장관에 대한 소송은 회의공개법 위반 180일 이내 또는 법 위반 인지 후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함 • 시민 누구나 법 위반 인지 후 180일 이내 또는 주 법무장관의 의견 공표 후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법원은 법 위반 기관에 최고 5,000USD의 벌금과 변호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사우스 캐롤라이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1차 법 위반에 대해 100USD의 벌금과 30일 징역, 그 후 법 위반에 대해 200USD의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음
사우스 다코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은 2급 경범죄임 • 개인 누구든 지방 법무장관 또는 사우스 다코타 회의공개위원회(South Dakota Open Meetings Commission)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위반을 확인한 법무장관은 회의공개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한다. • 회의공개위원회는 위원회는 위원의 다수결로 모든 회의공개 사건을 결정함 • 회의공개위원회는 주 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5명의 변호사로 구성됨
테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텍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는 무효화될 수 있음. • 위반자는 100~500USD의 벌금 그리고(또는)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C급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
유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법무장관 또는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법 위반에 대해 적절한 변호사 비용을 부과하고 B급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채권, 지폐 발행과 관련된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30일 이내에, 이외 다른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90일 이내 소송이 제기되어야 함
버몬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법 위반에 대해 최고 5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버지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법원은 1차 위반에 대해 250~1,000USD의 벌금을, 그 후의 위반에 대해 1,000~2,5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워싱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개인이든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는 무효화될 수 있음. • 법원은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개인들에게 최고 100USD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관에 모든 변호사 비용을 부과할 수 있음

웨스트 버지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모든 법적 소송은 위법한 회의 후 120일 이내 제기되어야 함 •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는 순회법원에 의해 무효화될 수 있음. • 법원은 1차 위반에 대해 최고 500USD의 벌금, 2차 위반에 대해서는 100~1,000USD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위스콘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을 위반을 알고도 회의에 참석한 기관의 구성원 또는 다른 행위 또는 누락으로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기관의 구성원에 벌금을 부과함 • 회의 비공개에 반대한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음
와이오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공개법 위반 회의에서 정해진 행위, 조치는 무효로 간주됨 • 회의공개법을 위반한 공무원은 경범죄 처벌과 750USD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